

WTO 제9차 각료회의 출장 결과

1. 출장자: 송주호

2. 출장기간 : 2013년 12월 1일 - 7일

- 회의 일정(당초보다 1일 연장되어 12월 7일 폐막됨)

시 간	내 용
12.2(월) 09:00 ~ 12:00 14:00 ~ 15:00	• G33(농산물 수입개도국) 각료회의 • IGDC(비공식 개도국 그룹) 각료회의
12.3(화) 15:00 ~ 16:30 17:30 ~ 18:30	• 개막식(WTO 사무총장·의장 연설 및 보고) *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니 대통령 참석 • GPA 각료회의
12.4(수) 08:00 ~ 09:00 09:30 ~ 13:00 14:00 ~ 16:00 16:30 ~ 18:00	• G10(농산물 수입국) 각료회의 • Plenary Session (오전) • Plenary Session (오후) • 예멘 가입 행사
12.5(목) 09:00 ~ 13:00 14:00 ~ 17:00 19:30 ~	• Plenary Session (오전) • Plenary Session (오후) • 인니 통상장관 주최 Gala Dinner
12.6(금) 10:00 ~ 13:00 12.7(토) 15:00 ~ 16:00	• Plenary Session • 폐막식

3. 장소 : 인도네시아 발리

4. 주요 이슈

- 1) 무역원활화: 통관규정 등 무역 장애로 작용하는 내용 철폐
- 2) 농업분야: 개도국 식량안보, TRQ 관리 방안, 수출보조 철폐
- 3) 개발분야: 면화,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

5. 회의 결과

- 발리에 오기 전까지 제네바에서 이루어진 집중논의를 통해 주요 쟁점은 개도국 식량안보와 무역원활화의 일부 조항으로 좁혀졌음.
- 발리에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개도국 식량안보이슈를 둘러싸고 인도와 미국간 대립이 치열하였으나 마지막 순간에 절충되면서 타결됨.
 - 개도국 식량안보: 개도국이 식량안보를 위해 주곡의 수매, 비축, 방출 관련하여 보조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일정 조건 충족시 농업협정의 보조규정 위반을 이유로 하는 WTO 제소를 자제하고(peace clause) 4년후에 다시 검토하자는 내용인데, 한시적 해법을 4년으로 한정하자는 의견(미국)과 영구적 해법을 만들 때 까지로 연장하자는 의견(인도)이 대립되었으나 결국 영구적 해법을 만들 때 까지로 타협됨.
 - 무역원활화 관련 잔존 쟁점들은 대부분 관련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다소 불완전하지만 타협을 이루었음.

6. 향후 계획

- 12개월 이내 그동안 DDA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작업계획을 세워 추진하기로 함.

7. 평가

- 이번 발리 package는 DDA 협상 전체 패키지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고 상대적으로 쟁점이 적은 분야만 선정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타결이 어려웠음.
- 하지만 일단 small package라도 타결에 도달함으로써 앞으로 DDA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다만, 최근의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보호무역 경향, 지역간 FTA 추진 추세 등으로 160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DDA 협상이 짧은 시간내에 타결되기는 힘들어 보임.
- 이번의 타결된 농업분야 3개 쟁점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임.
 - TRQ 관리강화: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소진율이 3년간 65% 미만일 때는 자동 수입허가방식을 도입해야 함. 다만 개도국은 예외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음.
 -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허용: 우리나라는 수매제도를 2005년에 이미 폐지하였으므로 관련 없음

- 수출경쟁: 홍콩각료선언에서 약속한 수출보조 등 수출경쟁 조치 철폐 필요성 재확인, 수출경쟁 관련 정보제공 등 투명성 강화 등 선언이므로 별 영향 없음

첨부: 세부 타결 내용

<참고: DDA 발리 각료회의시 주요 타결 내용>

□ 12월 3~7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WTO 제9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무역원활화, 개발 등의 10개 이슈로 구성된 발리 패키지가 합의되었으며

○ 이중 농업분야는 TRQ 관리, 개도국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수출 경쟁, 일반서비스, 면화 등 5개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 발리 패키지 : 농업(TRQ 관리, 일반서비스 확대, 개도국 식량비축, 수출 경쟁), 무역원활화(통관), 개발(면화, LDC DFQF 등)

□ 이번 WTO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농업분야 5개 이슈의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첫째, TRQ 관리개선에 대한 각료결정이 있었다. 동 제안은 브라질 등 G20(수출개도국 그룹)이 지난 2012.9월 제안,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 동 제안은 UR(우루과이 라운드)타결시에 TRQ 물량만 정하고 이행은 수입국의 재량에 맡겨진 결과, 수입국별로 TRQ이행률에 큰 차이를 보임에 따라, 수출국들의 요구로 농업협상 모델리티 초안(Rev.4)에 반영된 내용을 G20이 발췌해서 제안한 것이다.

* TRQ(Tariff Rate Quota) : 고관세 품목에 대해 일정물량의 저관세 수입 허용

- 주요 내용은 크게 본문과 부속서로 나뉘는데 본문은 90일전 TRQ 입찰 등 정보 공표, 30~60일 이내 TRQ 신청완료 등 TRQ 관리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것이고, 부속서는 TRQ 물량 수입률을 높이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이다.

- 특히,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시 현행 TRQ 관리방식을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방식으로 변경해야 하나 개도국은 의무가 면제된다.
 - 우리나라는 TRQ 관리가 합의됨에 따라, TRQ 정보 공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농축산물 수입관리 관련 고시의 일부 보완이 필요하나, 대부분 현재 규정상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3년 연속 소진율 65% 미만이 되더라도 TRQ 관리방식 변경의무가 없어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둘째, 개도국의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으로 인한 보조한도 초과에 대해 일정 조건 충족시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까지 분쟁 제기를 자제토록 하는 각료결정이 있었다.
- 개도국이 상기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각료회의 결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동 개도국이 각료회의 결정일(2013.12.7) 현재 운영되고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 프로그램 운용과정에서 보조한도를 초과해야 하고, 최근 5년간의 농업보조 통보, 비축 프로그램 운영정보, 비축물량 수출금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이러한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인도 이외의 국가가 동 결정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2017년 제11차 각료회의까지 영구적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작업계획을 세우고, WTO 일반이사회는 동 프로그램 및 작업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2015년 각료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영구적 해법이 마련될 때 까지 농업협정의 보조한도 초과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가 되나,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다른 회원

국의 상업적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보조금 및 상계관세 금지에 관한 협정에 의거 제소될 수 있다.

○ 셋째, 수출경쟁 관련하여 각료들의 정치적 선언이 채택되었다.

- 수출경쟁분야는 수출보조 철폐 및 수출신용 축소, 수출 국영무역 규율 강화 등 홍콩각료선언(2005)의 이행을 촉구하고,
- 수출보조 등의 감축기조를 유지할 것을 회원국들에게 촉구하고, 발리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조치에 대해 매년 농업위원회에서 점검기로 하였으며,
- 상기 농업위원회 점검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사무국은, 현재 농업협정상 통보의무가 있는 수출보조 외에 사무국이 수출신용, 수출 국영무역, 식량원조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에 질문할 질문서 양식에 대해 합의하였다.
- 우리나라는 UR 타결에 따른 수출보조 감축의무가 없고, 수출신용 등도 활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동 정치적 선언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넷째,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허용보조 항목을 일부 추가하는 각료결정이 있었다. 이를 통해 WTO 농업협정 부속서 2(허용보조)의 일반서비스 항목에서 불명확했던 홍수 통제 및 가뭄관리, 토양보존 등 관련 항목들을 추가함으로써, 일반서비스에 명확하게 추가했다.

-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 일반서비스 항목들은 예시적인 목록이므로, 홍수통제 및 가뭄관리 등 신설항목들도 기존 항목으로 허용보조로서 지원이 가능했으나, 금번 신설을 통해 허용보조로서 명확화 했다.

참고

농업 합의내용 요약 및 의의

① TRQ 관리 : 각료결정(15개 조문과 2개 부속서)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투명성 강화 (1~12조)	TRQ 개시 및 신청 등 공표(최소90일전, 30~60일내에 신청처리), 불필요한 지연 금지 등 TRQ 운영의 투명성 강화	TRQ 관리의 투명성강화로 수입국들의 TRQ 의무 이행 부담 증가 - 우리나라도 농축산물 수입허가 관련 고시 개선 필요
미소진 메카니즘 (부속서 A)	수입국이 3년 연속 TRQ 소진율 65% 미만 등 경우에 수입국은 TRQ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 (선착순 또는 비조건적 허가) - 개도국은 관리방식 변경 의무 면제	우리나라는 개도국으로서 관리방식 변경 의무 부담 없음
미소진 메카니즘 재검토 (13~15조)	12차 각료회의(2019)에서 미소진 메카니즘의 개도국 S&D 유지여부 등 결정 - 미 합의시, 적용 유보 선진국 적용제외	개도국 S&D 수정여부 관련 미국과 중국 등의 대립을 감안, 사무총장이 중재안을 제시, 합의를 도출
미소진 메카니즘 유보 선진국 (부속서 B)	제12차 각료회의에서 미 합의시, 목록에 등재된 선진국들은 적용 유보여부 결정가능	미국 등재 * 바베이도스 등 일부 개도국들은 미소진 메카니즘 적용배제의 명확화를 위해

② 식량안보 목적 공공비축 : 각료결정(10개 조문과 1개 부속서)

조문(제목)	주요내용	평가
목적 및 적용 (1~2조)	개도국이 식량안보 공공비축 관련, 보조한도 초과하고, 조건(통보, safeguard) 충족시, 농업협정 위반에 따른 분쟁으로부터 영구해법 마련시까지 보호	각료결정일 현재 공공비축제도가 있고, 조한도 초과 문제가 있는 인도 등 일부 개도국 활용예상
통보 및 투명성 (3조, 7조, 부속서)	최근 5년간 국내보조 통보, 비축프로그램 정보 제공 등 필요	농업위원회에서 통보 등 점검, AMS 한도 초과 등 투명성 조건 확인
세이프티(4~6조)	무역왜곡 제한, 타국 식량안보 침해 제한, 회원국 요청시 협의 의무	비축물량 수출금지 등 무역왜곡의 경우 보조금 협정에 따른 소제기는 가능
워크프로그램 (Permanent solution) (8~10조)	Post Bali 워크프로그램을 마련, 11차 각료회의시까지 permanent solution 확정 추진	11차 각료 회의시까지 permanent solution 마련 못할 경우, Interim solution이 계속됨

③ 일반서비스 추가 : 각료결정

제목	주요내용	평가
일반서비스	농업협정 부속서 2의 일반 서비스 추가(농지 개량, 토양 보전 및 자원 관리, 홍수 및 가뭄관리, 농촌 고용, 소유권 발급, 농민 정착)	WTO 농업협정 부속서 2의 2의 일반서비스의 일부 불명확한 항목을 명확화함

④ 수출경쟁 : 각료선언(13개 Paragraph와 1개 부속서)

제목	주요내용	평가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 중요성 재확인(1~7조)	2005 홍콩각료선언의 수출보조 철폐 등 개혁의 중요성 재확인, 농업 모델리티(Rev.4)가 향후 논의의 주기기초 중 하나임을 확인	수출보조 등 무역왜곡 보조 철폐 필요성 재강조, 법적구속력없는 선언적 의미
수출보조 등 자제(8조)	수출보조 및 수출신용 등 조치의 감축 기초 및 감축약속 이하 수준유지 등	아르헨티나 등은 법적 구속력을 요구, 미국, EU 반대로 정치적 선언화
Post-Bali Work(9~11조)	제9차 각료회의 이후 수출경쟁 이슈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농업위원회에서 매년 집중 논의키로함	수출보조 감축 모든 WTO 회원국이 동의하는 이슈로서 향후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임
투명성 확보 (12조, 부속서)	농업위원회의 매년 논의를 위해 농업협정에 의한 수출보조 외에 첨부 양식에 의거 사무국이 회원국의 수출신용, 식량지원, 수출 국영무역 정보를 취합, 제공함	농업협정상 통보의무 없는 수출신용, 식량원조, 국영무역 등 수출보조 이외 투명성 강화기반 마련

⑤ 면화 : 각료결정(11개 Paragraph로 구성)

제목	주요내용	평가
서문	면화 관련 홍콩각료선언 약속 및 농업협상에서의 중요성 재확인	C-4(베냉, 부르키나, 말리 등)의 홍콩 각료선언 이행 요구 미반영 - 미국은 DFQF 요구 등 거부,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사항 반복함
결정사항	① 농업위원회 면화 무역이슈 논의 (년2회), ② 사무총장 주관 LDC 면화 분야 강화 협의메카니즘 추진, ③ 사무총장 면화개발 및 교역관련 동향 정기 보고의무화(각료회의)	